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9. 25.

도시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장호섭 의원 등 8명(도하석, 권숙자, 강한곤, 이선주, 박정환, 황국주, 김장관)
- 발의일자: 2024. 9. 12.
- 회부일자: 2024. 9. 12.
- 상정 및 의결: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4. 9. 25.)

## 2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신설된 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에 맞게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」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하고, “재난취약계층”을 법령과 동일한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정비하였으며, 정보제공 및 교육,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 정비(제명, 안 전반)
  - “재난취약계층” → “안전취약계층”
- 목적과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(안 제3조 ~ 제4조)

- 제목 “(개선비용의 지원)” 을 “(업무의 위탁)” 으로 수정(안 제7조)
- 관계기관의 협력 신설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31조의2, 제66조의4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9조의2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9. 12. ~ 9. 23.): 의견없음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하고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개정 보완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안임.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 -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조항에서 “재난취약계층” 을 “안전취약계층” 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,
  - 안 제1조(목적)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“제4조” 에서 동법 “제31조의2” 로 변경하였으며,
  - 안 제2조(정의)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,
  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분리하여 각각 규정하는 한편,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추가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7조에서는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던 “개선의 위탁” 및 “개선비용의 지원” 조항을 병합하여 규정하였고,
  - 안 제9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,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·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의 정비와 체계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** 특이사항 없음

**7. 심사결과:** 원안가결